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VIII)

2022 VOL. 04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ISSUE PAPER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입법

김 호 은 객원교수(대전대학교 DMZ연구원)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ISSUE PAPER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VIII)

2022 VOL. **04**

ISSUE PAPER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입법

CONTENTS

I . 서론

II . 문재인 정부 한반도정책

- | | |
|----------------------------|----|
|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10 |
| 2. 평화경제 | 12 |
| 3.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통한 평화 실현 | 14 |

III .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제도화 추진

- | | |
|-------------------------------|----|
| 1. 9.19 군사합의 -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 20 |
| 2.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26 |
| 3.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 33 |
| 4.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 35 |

IV . 입법·정책 등 제도화 추진

- | | |
|-------------------------------|----|
| 1. 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제도화 노력 | 40 |
| 2.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분권형 대북정책 | 43 |
| 3. 비무장지대 입법화, 접경지역 안전 보장 및 발전 | 51 |
| 4. 국민들이 체험하는 평화 | 56 |

V . 결론

표 목차

<표-1>	5대 국정목표 :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0
<표-2>	베를린 구상 : 5대 정책방향, 4대 제안	10
<표-3>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체계도	11
<표-4>	5대 국정목표별 추진실적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중 국정전략 19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11
<표-5>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14
<표-6>	문재인 대통령 명의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2019.5.27.) 주요 내용	15
<표-7>	공동성명(2018.6.12.) 주요 내용	15
<표-8>	평양공동선언(2018.9.19.) 주요 내용	16
<표-9>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2018.9.19.) 주요 내용	17
<표-10>	남북군사회담 추진 경과	20
<표-11>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합의 주요 내용	21
<표-12>	3차 협의체 회의 개최 및 비무장화 추진 일지	23
<표-13>	남북 당국 간 회담 일지	26
<표-14>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주요 내용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34
<표-15>	중전선언 관련 유엔총회 연설	35
<표-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남북합의 및 추진 내용	40
<표-17>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내 남북 협의체	41
<표-18>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재복원 일지	42
<표-19>	남북영상회의실 시스템 설치 주요 내역	42
<표-20>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변천 과정	48
<표-21>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과정	50
<표-22>	대북전단 살포 관련 경과 및 판례	54
<표-23>	DMZ 평화의 길	57

그림 목차

<그림-1>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현황	22
<그림-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23
<그림-3>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발굴 지역 및 남북 연결 도로	24
<그림-4>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추진절차	47
<그림-5>	DMZ 평화의 길	57

이 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개괄하고 구체적인 입법, 정책과 그 추진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평화경제 및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실현의 과정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정책과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화 과정을 검토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추후 정부의 대북정책 형성에 참고자료로 작성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입법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

서론

ISSUE
PAPER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입법

김 효 은 객원교수(대진대학교 DMZ연구원)

I . 서론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던 구체적인 정책과 추진 과정을 분석하고자 함.
 - 중앙과 지방정부 수준에서 법·제도 변화
 - 국민생활 변화 : 군사적 위험 해소, 비무장지대 체험 등
- 남북 분단 현실에서 각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5년의 임기 내 추진하여 성과를 내하고자 하였음.
- 문재인 정부 한반도정책은 남북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임.
- 북한 핵·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독일 베를린구상을 발표하고(2017.7.6.),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2018.2)를 전기로 평화 공존, 공동번영을 2대 비전으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추진
 - 이를 동력으로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4.27.)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5.26.)을 개최
 -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2018.6.12.)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합의함.
 -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2018.9.19.)으로 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짐.

- 그러나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2.27.~28.)이 결렬되고 남북미가 판문점에서 회동(2019.6.30.) 하였으나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멈춤.
- 역대 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 문재인 정부 또한 ‘지속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무장지대 정책은 계승하면서도 남북관계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오래 단절된 남북정상 간 회담을 복원하고, 남북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
- 특히 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완화에 합의하고 군사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
-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추진하고 법률로써 평화적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북관계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음.
 - 비무장지대를 국제사회의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였음.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국제사회가 함께 해줄 것을 유엔총회 연설에서 거듭 호소함.
- 평화정착을 위한 방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했고, 남북 간 소통과 합의의 제도화를 추진함.
 -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추동했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고자 함.
- 남북 상시 협의체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고 남북 간 현안 협의를 정례화함.
- 남북교류협력 역량 확대를 위한 제도화에도 주력,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 등 분권형 대북정책을 추진함.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통일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함.
- 본 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했던 정책을 살펴보고,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심으로 분석했으므로 한반도 전반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다루지는 않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입법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I

문재인 정부 한반도정책

ISSUE
PAPER

II. 문재인 정부 한반도정책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함.
 - 국정지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설정하고, 3대 국정전략, 16개 과제(76개 실천과제)를 제시함.

<표-1> 5대 국정목표 :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국정전략			· 강한 안보는 책임국방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528개 실천과제)			16개 과제(76개 실천과제)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 1권, 선도국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 p. 123.

- 이후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 쿠퍼버재단 초청 연설(7.6.)에서 평화공존과 공동 번영을 비전으로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4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광복절 경축사,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힘.

<표-2> 베를린 구상 : 5대 정책방향, 4대 제안

5대 정책방향	1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
	2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의 단계적 포괄적 접근)
	3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 합의의 법제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4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5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지속
4대 실천과제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10·4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남북간 접촉 및 대화 재개	

출처 :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제1권, 선도국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 p. 168.

- 2017년 12월에는 국정과제와 베를린 구상 등을 발전시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완성함.

-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전략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와 4대 전략, 5대 원칙의 체계로 구성됨.

<표-3>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체계도

2대 비전	평화공존, 공동번영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출처 : 통일부, 『2021 통일문제 이해』, p. 158.

<표-4> 5대 국정목표별 추진실적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중 국정전략 19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 마련 및 구상 추진 :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 및 착공식 실시, 동해북부선 철도 복원 결정 및 착공 등 : DMZ 종합 실태조사 실시, DMZ 평화의 길 개방·운영 등 DMZ 평화 지대화 추진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회담 및 남북연락채널 운영을 통한 남북대화 여건 조성 노력 : 3차례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실무회담 등 개최 • 남북기본협정 추진체계 마련 및 남북기본협정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보 노력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 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2018.8., 833명 참여) •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간 협력 추진 :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산림병해충 공동방제(개성), 양묘장 방문(평양),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등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 참가(2018.2.~3.) •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서울·강릉), 남측 예술단 공연(평양), 10·4선언 11주년 남북 민간 공동행사(평양) 등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국민협약 추진(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 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2021.6.) • 인천통일+센터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및 권역별 통일+센터 설치 추진 • 통일교육 국민 참여 확대 및 평화·통일 및 사회통합형 통일교육으로 외연 확장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2018~2019)

출처 :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제16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pp.162-163.

2. 평화경제

- 문재인 정부는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구상을 강조함.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다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남북이 공동 번영을 이루자는 것임.

- 평화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접근법

- 국정과제 90번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임.

- 실천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을 설정함.

- 신경제구상의 목표는 남북 간 협력을 재개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며,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하여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 한반도 신경제구상 주요 내용

○ 비전 :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열린 공동번영

○ 목표 :

① 남북 경제통일 기반 조성

- 북한의 시장화 및 경제 회복 유도, 남북 시장통합 및 경제통일 구현

- 한반도 균형발전을 통하여 남북간 경제격차 해소 등 성공적 경제통일 기반 확충

②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 활동공간 확장 및 저출산·고령화·양극화·청년실업, 신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여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③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 남북 동북아 협력 확대가 북핵문제 해결 여건을 제공하고, 북핵문제 해결 진전은 경제협력 토대를 확장시키는 「평화-번영의 상호 촉진 구조」 창출

○ 원칙 : 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추진 ② 포괄적 호혜주의 견지 ③ 남북합의 및 국제규범 준수

- 방향 : ① 능동적인 환경 조성과 유연한 접근 ② 단계적 추진과 상호 응·복합성 강화
 - ③ 주변국 정책과의 조화 ④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 모색
- 4대 핵심정책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단천특구 등에서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매개로, 동해축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영동권)·북(동부권), 중(길림·흑룡강성), 러(연해주)의 발전적 협력축 마련
접경지역 평화 벨트	군사지역인 DMZ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활용하여 평화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을 산업단지로, 한강하구를 공동관리·이용의 장으로 조성하여 협력을 통하여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정착을 견인
환서해 물류·산업벨트	풍부한 인구와 산업시설 등 기존 인프라, 서울-평양을 잇는 서해축의 지리적 인접, 남북중 교역규모와 상호보완적 무역구조, 중국의 일대일로 진전에 따른 복합물류 혁신 등을 기회로 활용, 물류·산업 분야를 특화하여 개발
하나의 시장 협력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물리적·제도적 공간을 하나로 형성해 나감으로써 상품과 생산요소, 기술 교류의 촉진과 협력을 통하여 3대 벨트의 추진 기반 조성 및 생활공동체 구현

출처 :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제16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p. 202.

* 평화경제 관련 대통령 주요 연설문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2018.8.15.)

-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경제의 새 활로가 될 것입니다’ 2019 신년 기자회견(2019.1.10.)

-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북방으로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2019.8.15.)

-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19.9.24.)

-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 불용의 원칙입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2020.4.27)

-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발전하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일자리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2020.6.15.)

- 평화가 경제이고 일자리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작은 일부터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는 누가 대신 가져다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 한반도 평화경제론의 한계¹⁾

-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남북협력사업으로 구체화되었으나 그 실행 방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원칙적, 이상적 차원에서 제기함.
- 평화경제론의 정책화에서 필수적인 평화와 경제의 상호관계, 평화경제 실행의 조건, 정책 우선순위 등이 활발하게 검토되지 못함.
-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한다는 <판문점 선언>(2018.4.27.)은 평화경제 개념의 좋은 적용 사례임.

3.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통한 평화 실현

(1)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4.27. / 판문점 평화의 집)

<표-5>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전문)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 시대 개막을 전 세계에 천명,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 ① 민족자주 원칙의 확인과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여 합의 실천 대책 적극 수립
 -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 ④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 ⑤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와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진행
 -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실천 대책 추진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하여 공동 노력
 - ①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 ③ 교류·왕래에 군사적 보장,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 정전상태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은 역사적 과제
 - ① 무력 불사용, 불가침 합의 재확인
 - ②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 실현
 - ③ 올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후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
양 정상은 정기적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 논의, 문재인 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1) 인천광역시, 『한반도 점경평화 선도를 위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 수립 연구』, 2022, p. 149.

(2)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5.26. / 판문점 통일각)

<표-6> 문재인 대통령 명의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2019.5.27.) 주요 내용

- 김 위원장 위원장이 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옴.
 -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 부여
-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
-
-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양측의 직접 소통과 실무협상을 통한 충분한 사전 대화 필요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 의사 피력
 - 양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 성공 및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함.
-
-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재확인. 남북 고위급 회담 6월 1일 개최 합의
 -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합의

(3)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2018.6.12. / 싱가포르 센토사섬)

<표-7> 공동성명(2018.6.12.) 주요 내용

(전문) 트럼프 대통령, 대북 안전보장 제공 약속 / 김정은 위원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번영에 이바지, 상호 신뢰구축이 비핵화 추동 인정

1.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3. 「판문점 선언」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확약
4.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유해 발굴 및 송환

(후문) 합의사항 완전·신속 이행, 고위급 후속협상 조속 개최

(4)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9.18.~20. / 평양)

<표-8> 평양공동선언(2018.9.19.) 주요 내용

(전문)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지속 발전 판문점 선언 철저 이행 약속, 평양정상회담의 중요성 공동 인식

1. 비무장지대 및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
 - ①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채택, 철저 준수·성실 이행, 한반도 항구적 평화지대 실천적 조치
 - ②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조속 가동,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위한 상시 소통과 협의
2. 민족경제 균형발전 위한 대책 강구
 - ①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 ②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 ③ 자연생계태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적극 추진, 진행 중인 산림분야협력 성과 노력
 - ④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3. 이산가족 문제 근본 해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 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화소 조속 개소, 면화소 시설 조속 복구
 - ②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 해결
4.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적극 추진
 - ① 문화 및 예술 분야 교류 증진, 10월 중에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 진행
 - ②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 ③ 10·4 선언 11주년 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
5.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한반도 실현
 - 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 폐기
 - ②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 용의
 - ③ 한반도 완전화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남북 긴밀 협력
6. 가까운 시일 내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5)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군사 분야의 포괄적 합의

- 남북 정상외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직후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

<표-9>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2018.9.19.) 주요 내용

(전문)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항구적·공고한 평화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공동된 인식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 위한 포괄적 합의

1.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 ①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어떤 경우에도 무력 사용 불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
- ② 군사분계선 각종 군사연습 중지
- ③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 ④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4개 단계 절차 적용
- ⑤ 상시 연락체계 가동, 군사적 문제의 평화적 해결

2.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 ① 상호 감시초소(GP) 전부 철수위한 시범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 초소 완전 철수
- ②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 ③ 시범적 남북공동유해 발굴
- ④ 역사유적 공동조사·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대책 협의

3.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 ①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2004.6.4.) 재확인 및 전면 복원 이행
- ②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 ③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출입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
- ④ 불법어로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보장 위한 남북 공동순찰 방안 마련 시행

4.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 관련 군사적 보장

- ①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3통) 군사적 보장
- ②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군사적 보장
- ③ 북측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
- ④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5.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 ①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문제 협의
-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협의
- ③ 남북군사당국 간 합의의 철저 이행 및 정기적 이행상태 점검·평가

(6)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2019.6.30.)

-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 공식 발표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먼저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만나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이동
 - 역사상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 양 정상은 재차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와 자유의 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군사분계선에서 25m 떨어져 있는 미군 경비대대의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 Oullette)를 방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입법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제도화 추진

ISSUE
PAPER

Ⅲ.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제도화 추진

1. 9.19 군사합의 -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 2018년 4·9월 남북은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를 통하여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
 - 판문점 선언 2조 :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참여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1항 :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9월 평양공동선언 1조 :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의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은 장성급군사회담, 실무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을 협의함.

<표-10> 남북군사회담 추진 경과

회담명(일자)	주요 내용
판문점 선언 (2018.4.27.)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추진방향 제시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평화체제 구축 협력
8·9차 장성급군사회담 (2018.6.14. / 2018.7.31.)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입장 교환, 포괄적 군사합의서 초안 마련
40차 군사실무회담 (2018.9.13.~9.14.)	'군사분야 합의서' 문안 등 최종 실무협의 합의서에 포함될 사안에 대하여 상호입장 확인 및 합의서 문안 최종조율
평양공동선언 (2018.9.19.)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제 조치를 포괄적으로 반영
남북군사실무접촉 (2018.10.12.)	9·19 군사합의 관련 이행방안 실무적 협의 JS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 GP 시범철수,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10차 장성급군사회담 (2018.10.26.)	9·19 군사합의 이행실태 중간평가 및 향후 충실한 이행을 위한 쌍방 의지 확인 및 추진방안 논의

<표-11>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합의 주요 내용

합의 사항	주요 내용
1. 감시초소(GP) 상호 철수	GP 전부 철수를 위한 시범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 초소(11개) 완전 철수(2018.12.31.완료)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지뢰 제거, 초소 및 인원·화기 철수 감시장비 정보 공유, 공동검증 등
3. 남북공동유해 발굴	강원도 철원지역 일대에서 시범 발굴 지뢰와 폭발물 제거(10.1.~11.30.) 남북간 12m 폭 도로 개설(12.31.완료) 공동발굴단(19.2월말까지 구성, 19.4.1.~10.30. 진행)
4. 역사유적 공동조사·발굴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 지속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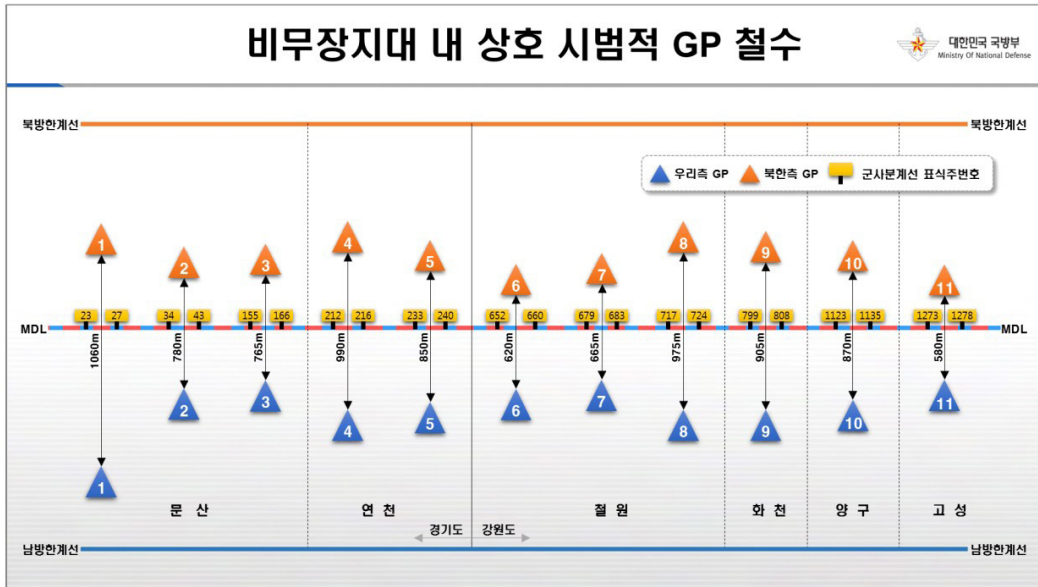
출처 : 국방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2018.9.19.).

(1) 감시초소(GP) 상호 철수

- 남북은 2018년 12월 비무장지대의 모든 GP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고, 거리가 가까워 우발적 충돌이 우려되는 남북한 11개 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함.
-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역사적 상징성과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남북이 각각 1개 GP를 보존하기로 합의, 오성산 아래 북측 초소와 금강산의 감호가 잘 보이는 남측 초소는 제외함.
- 문화재청은 2019년 6월 남측 지역에 최초로 설치되었다가 남은 369GP²⁾를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라는 별칭으로 문화재로 등록함.

2)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뒤 남쪽에 처음 설치된 감시초소로, 북측 감시초소와 최단 거리(약 580m)에 위치

<그림-1>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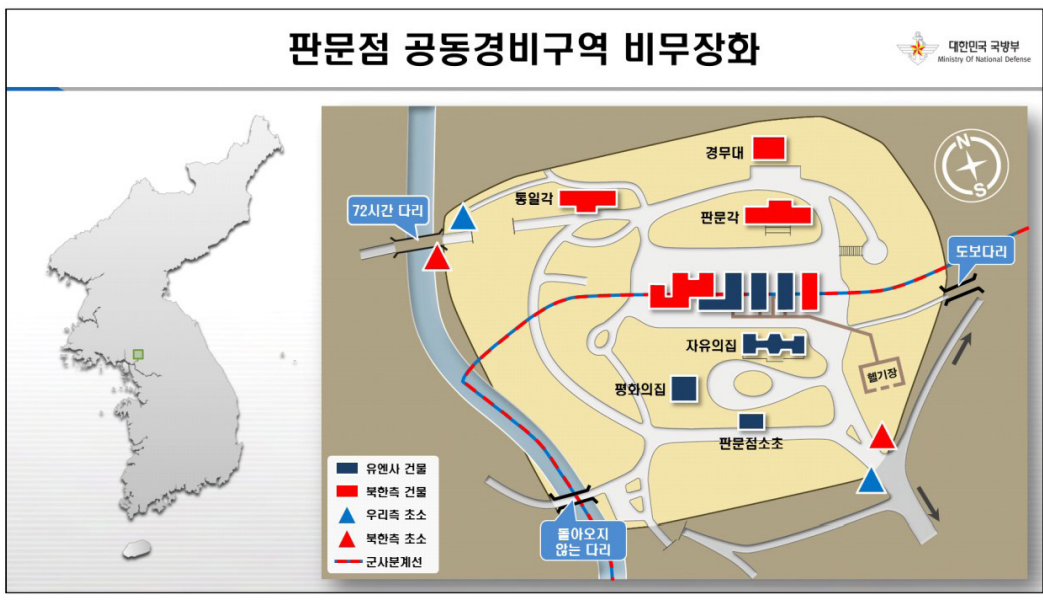


출처: 국방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2018.9.19).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JSA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한 군사분계선상의 지역
 - 남북이 왕래하였으나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으로 남북이 분할 관리함.
- 9·19 군사합의 2조 ②항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JSA를 완전 비무장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유엔사를 포함한 3자간 협의체를 구성
- 초소와 병력·화기를 철수하는 JSA 비무장화가 2018년 말 폐쇄회로(CCTV) 재배치와 공동 근무초소 통신선로 설치 작업을 끝으로 완료

<그림-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출처 : 국방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2018.9.19).

<표-12> 3차 협의체 회의 개최 및 비무장화 추진 일지

회의명(일자)	주요 내용
1차(2018.10.16.)	추진 중인 지뢰제거 작업 추진사항 점검 화기·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 조치 실무협의
10.20. 지뢰제거 완료	10.1부터 시작 유엔군사령부, 지뢰 제거 작업 검증
2차(2018.10.22.)	지뢰제거 작업 공식완료를 확인·평가 화기·초소 철수일정, 경계근무인원 조정방안 협의 10월 25일까지 JSA 내 화기·초소 철수에 합의 25일 이후 2일간 '3자 공동검증' 실시에 합의
10.26. ~ 27. 3자 공동검증	초소 내 모든 시설,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자 철수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 완료
3차(2018.11.6.)	10.26~27 진행되었던 3자 공동검증결과 평가 양측 진입로상 신규 설치된 경계초소 확인 상대측 지역에서의 경계근무 시행을 위한 공동근무수칙 마련에 합의 감시장비 조정 및 상호 정보공유 방안 협의
12.12. 남북 상호검증	남북 각각 11개소 총 154명 구성 북측 GP 현장 검증 :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여부, 감시소·총안구 등 지상시설물 철거 여부, 지하 연결통로·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확인
12.28. 대통령 방문	화살머리고지 GP 방문(역대대통령 최초 DMZ 내 GP 방문)

(3) 남북공동 유해발굴

-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실질적인 첫 조치
- 북측의 불참으로 공동 유해 발굴은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우리 군은 우선 DMZ 내 우리 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실시(2019.4.1.~2021.6.24.)함.
 - 우리 측 유해 3,092점과 유품 10만 1,816점을 발굴하였고, 9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해봉안·안장식을 거행함.
 - 발굴과정에서 중국군으로 확인된 201구의 유해를 중국 측에 송환(2020.9.27., 2021.9.2.)함.
-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와 전술도로 개설
 - 2018년 10월부터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 제거
 - 발굴 지역에 12m 너비의 도로를 개설하고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한다고 합의
 -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군사도로를 연결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그림-3>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발굴 지역 및 남북 연결 도로



출처 : 유강문, “한반도 중앙에 남북 연결 ‘군사도로’ 생겼다.” 『한겨레』 2018.11.22.

(4) 남북 공동 수로 조사

-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제5조를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합의
 -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 9.19 군사합의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
-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2018.10.26.)에서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 공동수로조사에 합의
- 2018.11.5.부터 12.9(총 35일 간) 총 수로측량구간 660km
 -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함께 탑승해 수로 측량, 항해 물길 확인
 - 남북군사실무접촉(2019.1.30.)에서 한강하구 해도를 북한에 전달
- 2019년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 환경부와 통일부는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간 한강하구의 우리 측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에 착수
- 이후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중단
- 한강하구는 임진강 하구에서 강화군 불음도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남북 사이에 위치한 일정의 중립수역으로
 - 정전협정 제1조제5항) “한강하구의 수역으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에 이를 개방한다”
 - 육지에 있는 비무장지대와는 달리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지역
 - 그러나 6.25 전쟁 이후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 정상적인 이용과 개발 또한 불가능
- 어장확장과 야간조업 연장
 - 해양수산부는 2019년 3월 25일 서해 5도에서 245km²의 어장확장과 야간조업 1시간의 조업시간 연장 허용

2.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 남북고위급회담

<표-13> 남북 당국 간 회담 일지

차수(일자)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18.1.9.)	판문점 평화의집	•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적 긴장완화, 각 분과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 개선 사안
제2차 (2018.3.29.)	판문점 통일각	•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진행
제3차 (2018.6.1.)	판문점 평화의집	•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장성급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담 등 분야별 후속회담 개최
제4차 (2018.8.13.)	판문점 통일각	•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종합 점검,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
제5차 (2018.10.15.)	판문점 평화의집	• 9월 평양공동선언 세부 이행방안 - 분야별 후속 회담 개최,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합의

(2) 경제분야 회담 및 남북경제협력

-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토대로 평화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지속
-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하여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교환
-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제5조에서 철도, 도로 협력에 합의
 - “남북한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해 가기로 했다”
- 4.27 판문점 선언 제1조제6항, 동해선 및 경의선 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
- 9.19 평양공동선언 제2조제1항,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에 합의
-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2008.1.29.) 이후 10년 만에 개최
 -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 논의

•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2008.2.12.) 이후 10년 만에 개최
-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협의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 2차례의 분과회담을 통하여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추진, 생태계 보호·복원 등 구체적 사업을 합의하였고, 금강산 지역 병해충 공동조사, 개성 소나무 재선충병 공동방제 등을 실시

회담명	일자	장소	주요 내용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	2018.6.26.	판문점 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사업 동시 추진 •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 현지 공동조사 진행 •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7.24 경의선부터 시작하여 동해선 순으로 진행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2018.6.28.	판문점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선·경의선 도로협력 사업 동시 추진 •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 고성~원산 및 경의선 개성~평양까지로 정하며 추후 확대 •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하여 동해선 순으로 진행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제1차 (2018.7.14.)	판문점 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조성과 보호 협력 추진 •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7월 중순 현장방문
	제2차 (2018.10.22.)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매년 진행, 북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 단계적 추진

• 남북철도 공동조사

- 경의선·동해선 조사와 평라선을 통한 북한 내부 이동 등 총 2천600km
- 경의선(개성~신의주) 약 400km, 동해선(금강산~두만강) 약 800km
- 2007.12 경의선 조사 이후 처음, 2008.11 운행이 중단된 도라선-판문역간 화물열차 이후 10년 만임.

• 남북철도 공동조사 일시 중단 및 재개

- 2018.8.23일부터 진행하려던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 조사는 유엔군사령부에 막혀 무산
- 남측 열차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유엔사가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음.
- 11.20. 미국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타결
- 경의선 구간은 11.30-12.5까지, 동해선 구간은 12.8-17까지 공동 조사함. 통일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총 28명 참여

-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 차량이 운행하게 됨.

• 남북도로 공동조사

- 경의선 : 2018.8.13.~20., 우리측 공동조사단 28명

개성에서 평양 방면으로 도로·교량·터널 등 3개 부문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도로 161km, 교량 89개, 터널 18개를 대상으로 실시

- 동해선 도로는 공동조사가 아닌 현장 점검으로 12.21~23 진행

•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 판문점 선언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 2018.12.26, 오전 10시, 개성 판문역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100여명 참석

- 철도 침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등

- 개성 출산 이산가족 5명과 11년 전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운행한 기관사는 물론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인사들도 참석하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의미를 살림.³⁾

• 남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해북부선 단절 구간(강릉~제진) 복원 사업 진행

- 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총 112km, 단선 전철

- 1967년 양양-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

•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 판문점 선언 2주년과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2020.4.27.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진행

•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⁴⁾

- 2022.1.5. 고성군 제진역, 문재인 대통령 참석

3)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혈맥 잇는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12.26.

4) "대륙철도망 잇는 동해북부선 53년 만에 복원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5.

(3) 인도·사회분야 회담

3-1) 남북적십자회담

차수(일자)	장소	주요 내용
제12차 (2018.6.22.)	금강산	상봉행사(8.28-26) 진행, 남북 각각 100명씩 금강산면회소 보수, 남측시설 점검단 파견(6.27~)

3-2) 남북체육회담

회담명	일자	장소	주요 내용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1차 고위급 회담 후속 (2018.1.17.)	판문점 평화의 집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 남북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북측 응원단·태권도 시범단 파견,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북측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
남북체육회담	3차 고위급 회담 후속 (2018.6.18.)	판문점 평화의 집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남북통일농구 경기 개최(7.4, 평양)
남북 체육당국자 실무접촉	2018.7.5.	평양	남북 공동입장, 여자농구·카누·조정 등 3개 종목 단일팀 구성과 합동훈련 합의
남북체육분과회담	제1차 (2018.11.2.)	개성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 공동 진출, 2019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단일팀 진출, 2031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의향 서신 IOC에 전달

3-3)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회담명(일자)	장소	주요 내용
5차 고위급 회담 후속 (2018.11.7.)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 실시,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 협력,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 협의 추진
국장급 실무회의 (2018.12.12.)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플루엔자 정보 시범 교환, 감염병 정보 정기·수시 교환방안 협의

(4) 예술단 공연 관련 실무접촉

1) 북측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2018.1.9.) 합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북측의 고위급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1.15.) 판문점	북측의 삼지연관현악단 140여명으로 구성된 예술단 파견,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
사전 점검단 방남(1.21.~22.)	경의선 육로로 남한 방문, 2016.2.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약2년 만에 다시 열림.
삼지연관현악단 공연(2회)	강릉 공연(2.8.) / 서울 공연(2.11.)

2)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실무접촉(2018.3.20.) 판문점 통일각	남측의 평양 공연 예술단 규모를 160여명으로, 4.1. 4.3에 평양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2회 공연
사전점검단 평양 방문(3.22.~24.)	

(5) 남북체육교류 추진 현황

1) 평창 동계올림픽

- 2018.1.20.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합동 회의 개최
 - 북한 선수단 규모, 남북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참가, 응원단 파견, 북한 예술단 방남 공연, 남북 태권도 시범단 공연,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등 합의
- 북측 사전점검단(2018.1.25.~27.) 파견, 올림픽 시설, 숙소 등 점검
- 남측 선발대, 남북공동훈련 장소인 마식령스키장 방문하여 현지 점검(2018.1.23.~25.)
- 남북 합동훈련(2018.1.31.~2.1.)
 - 남한 선수 24명, 북한 15명 참가, 동계종목 사상 첫 남북합동훈련
- 북한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 총 470명 참가
 - 장웅 IOC 위원 및 김일국 체육상 등 체육계 고위인사 포함 선수단 46명, 응원단 229명, 예술단 137명, 태권도 시범단 31명, 기자단 21명 등 총 470명의 방문단 파견
 - 2007년 제6회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이후 11년 만에 공동 입장
 -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 기존 한국 23명에 북한 선수 12명 추가

- 북한 삼지연예술단 공연
 - 만경봉 92호를 타고 목호항을 통하여 입경(2.6.)
 - 강릉아트센터(2.8.), 서울 국립극장(2.11.)에서 공연하고 경의선 육로로 귀환(2.12.)
- 북한 태권도 시범단 공연
 - 경의선 육로로 입경(2.7.)
 - 올림픽 개막식 시범공연(2.9.), 속초공연(2.10.), 서울시청 공연(2.12.), MBC 상암홀 공연(2.14.) 등 총 4회 공연, 경의선 육로로 귀환(2.15.)
- 남한 태권도 시범단 북한 공연
 - 시범단 4월과 10월 두 차례에 방북
 - 4월, 평양 단독공연(4.1.) 남북 합동공연(4.2.) 진행
 - 10월, 태권도 시범단 25명을 포함한 총 49명이 방북(2018.10.30.~11.3.), 태권도전당에서 단독공연(2018.10.31.)과 합동공연(2018.11.2.)
 - 2019년 유럽 순회 '태권도 시범단 남북합동공연' 진행
- 평창패럴림픽 북한 참가
 - 선수단 및 국가패럴림픽위원회 관계자 등 총 24명 규모로 참가. 동계패럴림픽은 첫 출전

2)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 판문점 선언 제1조제4항 : 2018 아시아경기대회 남북 공동 출전 합의
- 개막식 공동 입장(한반도기), 역대 최다 종목 단일팀 구성
- 국제종합경기대회 남북 단일팀 사상 최초 금메달(여자 카누 용선 500m) 획득, 남북 단가인 '아리랑'이 연주됨.
- 2018 자카르타 아시안패럴림픽(2018.10.6.~ 10.13.) 남북 참가
 - 장애인 체육사상 최초로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남자 탁구 단체전, 수영)

3) 남북 통일농구경기

- 2018.6.18.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7.4 남북공동성명 기념일 계기, 남북 통일농구경기 평양 개최, 가을에는 서울 개최 합의
 - 평양(7.3.~7.6.): 남북 혼합경기(7.4.), 친선경기(7.5.), 서울경기는 연기

4) 국제경기에서 남북 체육교류

① 태권도

-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2017.6.24.~30., 전북 무주)에 국제태권도연맹(ITF) 소속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우리나라 세계태권도연맹(WT) 초청으로 참가
- 북한 태권도 시범단 4회 시범공연

② 탁구

- 2018 세계탁구선수권대회(2018.4.29.~5.6., 스웨덴), 여자단체전 8강에 진출한 남북한은 국제탁구연맹 주선으로 단일팀 구성 준결승전 진출
- 2018 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2018.7.17~7.22., 대전)
- 2018 스웨덴오픈국제탁구대회(2018.10.29.~11.4., 스웨덴)

③ 아이스하키·유도·핸드볼·축구

-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2018.8.31~9.15., 창원), 북한 사격선수단 22명 참가, 은메달 2개·동메달 2개 획득
- 2018 세계유도선수권대회(2018.9.20.~9.27., 아제르바이잔), 남북 혼성단체전 단일팀 참가, 동메달 획득
- 2019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2019.1.10.~27., 베를린·코펜하겐), 우리 선수 16명, 북한 선수 4명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단기)와 아리랑(단가) 사용
- 2019 아시아주니어·카뎃 탁구선수권대회 동아시아 예선전(2019.5.18.~19., 평양), 우리 선수 등 14명 참가, 1위
-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2019.10.15., 평양), 우리 선수 25명과 임원 30명 등 총 55명 방북
-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2019.10.19.~27., 평양), 우리 선수 38명, 임원 25명, 기자 2명 등 총 65명 참가
- 2019년부터는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경기에는 참가하지 않음.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7.12.~28., 광주), 2019 동아시아컵 축구대회(2019.12.10.~18., 부산)에 초청하였으나 참가하지 않음.

- 2019 아시아피스컵 국제배구대회(2019.6., 자카르타), 남한에서는 경기도체육회 등 52명, 북한에서는 4.25 체육단 등 32명 참가
- 2019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2019.11.25.~29., 블라디보스톡), 서울시 선수단 17명, 평양시 선수단 20명 참가

3.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1971년 유엔군 수석대표의 최초 제안으로 시작. 남한은 북한에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도시 건설, 생태평화공원 또는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
- 이후 노태우 정부의 ‘DMZ 내 평화시 건설구상’을 비롯, 김영삼 정부의 ‘DMZ 자연공원’, 노무현 정부의 ‘DMZ 평화생태공원’,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구상과 DMZ 생태공원’,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등이 꾸준히 제기됨.⁵⁾
- 문재인 정부는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19.9.24)에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함.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
-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남북과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국제평화지대로 함께 만들어가자는 구상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5) 류지성 외, 『DMZ국제평화지대화 기반형성에 관한 법제연구』, 통일법제연구 21-18-1, p. 21.

<표-14>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주요 내용(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⁶⁾

제안 과제	주요 내용
1.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비무장지대는 인류의 공동유산
2. 비무장지대 인근을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	판문점-개성 일대 비무장지대에 '평화협력지구' 조성, 남과 북, 국제사회와 한반도 변영 설계 공간
3.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로 조성	유엔기구 및 평화, 생태, 문화기구 유치
4. 비무장지대 대인지뢰 제거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비무장지대를 국제적 협력 지대로 만들어낼 것

•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조치에 따라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가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변모해감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불가역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표명

- 비무장지대는 남과 북의 합의와 협력으로 평화지대로 바뀌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불안이 내재함. 그러므로 비무장지대의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함.⁷⁾

• 국제사회의 보장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군사적 충돌이 불가능한 항구적인 평화지역으로 만들어 북한에게는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남한에게는 항구적 평화를 얻게 하는 구상임.⁸⁾

• 평화경제를 위한 새로운 동력의 창출⁹⁾

- DMZ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을 단절시킨 분단경제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지대화는 단절을 극복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6) 개별사업 의의와 기대효과는 류지성 외 pp. 58-71 참조.

7) 김효은, "문재인 정부 비무장지대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접경지역통일연구』 제5권 제2호, p. 154.

8) 현승수 외, 『한반도 평화 변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KINU 연구총서 19-27』, p. 70.

9) 조한범,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2019-21(2019), pp. 1-3.

· 남북한 접경위원회 설치 제안

-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 초청 연설에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는 협력의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선례가 한반도에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언급
- 동서독 접경위원회는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두 지역 사이의 연계된 하천과 자원의 공동 관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독일 통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 상설 기구로 남북한 접경위원회를 설치하여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 지역의 보전·개발·관리와 관련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¹⁰⁾

4.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 한반도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전상태임.

-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약속했으나, 정치적 합의에 실패하여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지 못함.

<표-15> 종전선언 관련 유엔총회 연설

회의(일자)	주요 내용
제73차 유엔총회 (2018.9.25.)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 과감한 비핵화 조치들이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
제74차 유엔총회 (2019.9.24.)	한반도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인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 재확인 이 원칙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제안
제75차 유엔총회 (2020.9.23.)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램
제76차 유엔총회 (2021.9.22.)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2018.8.15., 광복절 경축사)

-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
-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

10) 류지성 외, 앞의 글, p. 48.

-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
-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있는 선례
- 본격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출범(2020.12.29.)

- 2020.9.23. 제75차 유엔총회 기초연설에서 제안
-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 남북이 생명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될 것
- 출범회의 : 민간 합동 화상회의 형식,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과장급 당국자와 주한대사관 실무관계자, 보건 및 국제관계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2021.8.15.)에서도 언급¹¹⁾

11)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정보공유와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 코로나 대응인력 공동 훈련 등 협력사업을 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ISSUE PAPER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Ⅷ)

2022 VOL. 04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입법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V

입법·정책 등 제도화 추진

ISSUE
PAPER

IV. 입법·정책 등 제도화 추진

1. 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제도화 노력

(1)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 남북이 최초로 공동 운영하는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 같은 건물에서 상주하면서 대면, 협의

<표-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남북합의 및 추진 내용

일자 및 회의	주요 내용
2018.4.27. 남북정상회담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
2018.6.1. 남북고위급회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함.
2018.6.8.	통일부차관을 단장으로 한 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 개성공단 방문, 현장 점검 실시
6.19.~22.	보수공사준비팀이 공사 관련 협의와 사전준비 작업 진행
6.22.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 TF' 출범 개성공단 내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청사를 개보수하여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로 사용하기로 합의
7.16.	당국자와 한국전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현대아산 등 지원시설 관계자들이 개성 현지에 체류하며 개보수 공사 실시
8.23.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실무협의·최종 합의
2018.9.5. 대통령 특사 방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합의
9.14. 개소식 개최	조명균 통일부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급회담 양측 수석대표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명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주요 내용

-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 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진행

- 소장을 포함하여 각기 15~20명 정도로 구성, 증원 가능, 보조인원 별도 운영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7:00 운영, 정상근무 시간 외에 제기될 수 있는 긴급한 문제 처리를 위하여 비상연락수단 설치·운영
 -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매주 1회, 필요한 경우 더 진행
 -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통행과 편의는 당국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
- 남측 사무소는 통일부와 유관부처 파견인원 30명으로 구성된 사무처(3개 부서) 설치
 - 운영부 : 남북 소장·부소장회의 및 정치·군사분야 협의, 시설 관리와 예산 운용
 - 교류부 : 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보건 분야 등의 협의 및 민간·지자체 교육지원 업무
 - 연락협력부 : 남북 간 연락·협의 관련 및 민간·지자체 교육지원 업무
 - 정부서울청사에 공동연락사무소 분소 설치·운영 : 개성과 서울 업무 연락
 - 사무소 운영은 남북 협의하여 결정, 화재 등 재난 대비 공동 소방훈련실시, 상수원(월고저수지) 및 전력시설 공동 점검 실시
 - 남북소장회의는 주1회 개최 원칙, 부소장 회의도 주 1~2회 개최
 - 2018.9.14. 개소 이래 2020.1.30.까지 총 970회 대면 협의¹²⁾

<표-17>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내 남북 협의체

회의체		개최 현황	주요 논의 사항
소장회의	주 1회	총 19회 개최 2019.2.28.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개최	사무소 관련 사항 상시 협의, 남북 간 현안과 회담·행사 준비 논의
부소장회의	주 1~2회	2019.6.4. 이후 미개최	사무소 운영 관련 현안 수시 논의, 남북 협력 사업 진척 상황 및 연락사무소 운영 문제 논의
연락대표 협의	1일 2회 (09:30, 15:00)	매일 정례협의 우리측 철수 이후 유선 협의	남북 간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문건 전달
기타(운영협의 교류협의)			사무소 운영 실무 논의, 교류사업 관련 통지문 전달·관련사항 전파 등 실무 협의

- 남과 북은 매일 오전, 오후 정례 연락대표 협의를 비롯한 다양한 연락과 협의를 진행
 - 산림협력회담, 체육분과회담, 보건의료분과회담 등 각 분야 남북회담 개최
 - 2018.10. 평양에서 개최된 10·4 선언 11주년 행사 사전 논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사전 협의

12) 대한민국 정부, 『문제인정부 국정백서 제16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p. 137.

- 2020.1. 코로나 발생 초기에 북한은 방역 차원에서 우리측 인원의 철수 요구, 1.30 개성에서 철수, 정부서울청사 내 서울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9시와 오후 5시에 정기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통신연락선 유지
- 2020.6.4.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 언급
- 6.5.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 공동연락사무소 철폐할 것 발표
- 6.9. 남북 통신연락선 전면 차단(공동연락사무소 개소 635일 만에 통신 단절)
- 6.16.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2) 남북통신연락선과 남북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표-18>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재복원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18.6.25. 남북통신 실무접촉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 관련 논의 (서해지구 7월 16일부터, 동해지구 8월 15일부터 복구·정상화) 2008년 5월 이후 중단된 남북 경비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은 7월 1일부터 교신 재개
2018.11.23. 남북통신 실무회담	북이 남북 간 통신망 개선 실무회담 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은 남북 간 직통회선의 광케이블 교체 문제 제안, 남한은 남북이 함께 광통신망 구축 협력 호응, 앞으로 남북 간 광통신망 구축 등 통신현대화를 위해 지속 협의
2020.6.16. 단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폭파함에 따라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중단
2021.4월부터 복원 노력	친서 교환, 우선적으로 끊어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
2021.7.27. 통신연락선 복원	414일 만에 복원, 남북은 기존 방식대로 일일 2회(오전, 오후) 정례 통화 재개
8.10. 단절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이유로 통신에 응하지 않아 오후 마감통화부터 단절
10.4. 복원	58일 만에 복원, 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 통신선 채널을 통하여 각각 하루 2차례씩 정례 통화 재개

• 남북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 2021.4.26. 남북영상회의실 완공
- 코로나 확산 시기에 정부, 언론에 공개하고 판문점과 쌍방으로 연결하여 시연회 개최
- 언제든지 남북대화가 가능하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의미
- 6.16. 통일부장관 직접 시연

<표-19> 남북영상회의실 시스템 설치 주요 내역

설치장소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남북영상회의실
주요 장비	FULL HD급 카메라 6개, 98인치 대형 LCD 모니터 4개, 영상회의 전용 CODE 4개, 통합제어 프로그램 등 설치
기술검토	남북 간 전용 통신망(광케이블) 사용, 호환성 있는 코덱 사용시 영상회의 가능
활용분야	남북 간 영상회담·회의, 정부 기관간 영상회의, 국제 세미나 등

2.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분권형 대북정책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발전 과정

- 1998년 4월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1997년 6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1999년 처음으로 대북 인도협력 시작
- 1999년 10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2000년 7월 행정자치부, ‘남북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업무 처리지침’
- 2003년 5월 통일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
- 2020.12.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
- 현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과 각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법률에 기초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진행
 - 다만, 해당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제정한 지침 및 규정에 의하여 관리¹³⁾
- 정부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해 남북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그러나 이 법은 북한 주민 접촉 및 방북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분야 별 교류협력사업에 적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짐.¹⁴⁾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이해,” 『지방자치 정책Brief』, 제58호(2018.12.).

14)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p. 45.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법적·행정적 규율 필요성 제기
- 정부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조정을 행정자치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2000년 7월에 행정자치부는 「남북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업무 처리지침」 마련·시행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을 적용
 - 당해 사업을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를 한 후 통일부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사업 추진 후에는 행정자치부에 보고
 - 5단계 추진절차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계획수립 및 보고, ② 행정자치부 심의·조정, ③ 통일부에 승인신청, ④ 북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추진, ⑤ 교류협력 결과의 보고
 -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사위원회' 설치, 사전 심의조정
- 남북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업무 처리지침 문제점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지만,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 논란과 절차상의 중복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¹⁵⁾
 - 2000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총 6회 개최
 - 행정자치부 협의 조정 후 통일부를 거쳐야하는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 2003년 5월, 2000년 7월에 마련한 남북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업무 처리지침을 폐지하고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을 제정
 - 지자체 대북사업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통일부로 이관
 -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북지원, 협력사업 등 대북교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통일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자치단체가 대북 교류사업 추진단계 등과 동행시에도 사전 별도 접촉승인을 받은 후 추진
 - 대북협상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고 소요재원은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
- 2021년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주체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지자체 위상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남북협력사업 신속 추진

15) 이민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 :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2018, p. 13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2020.12.8.) 개정, (2021.3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확히 함(제24조)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제5조)
 - 2017년부터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실무협의회'를 법정 협의체로 격상(제24조)
 - 협력사업의 범위에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역, 교통 등의 분야를 추가(제2조)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민간 및 지자체 참여 확대
 -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의 협의·조정하고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관협의체
 - 위원장 1명 포함 18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 지자체 구성원 포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신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2에 의거한 법정 기구
 -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통일부와 소통과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정책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 제8항 규정에 따라 실무협의회 분과를 구성하고 2021년 4월 21일 첫 회의를 개최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p>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p>	<p>①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p> <p>③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설치)</p> <p>제5조(협의회의 구성)</p>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p> <p>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p>
<p>제2조(정의)</p>	<p>“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 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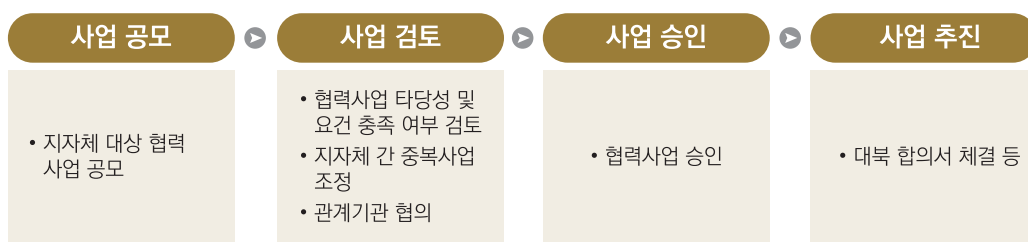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7조(남북교류협력 추진 협의회의 설치)</p> <p>제5조(협의회의 구성)</p>	<p>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p> <p>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p>
<p>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p>	<p>①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③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p>⑥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p> <p>⑦정책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p>

•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대표성·자율성·책임성 등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 기존 협력사업 승인절차와 달리 차별화·간소화함.(’21.4.21,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 과거에는 북한과 합의서 체결 이후 통일부에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요건 충족 시 합의서 체결 이전에도 사전승인을 가능하도록 해 절차 간소화
- (법률상 요건) 「교류협력법」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제1항 / (지방의회 승인 등) 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 진행 / (정책적 요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
- 2021.6.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 2021.12. 24개 협력사업 사전승인

<그림-4>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추진절차



출처 :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제16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p. 223.

(3)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개정

* 1999년 공포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대북지원사업자’를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 및 단체에 한한다)으로 규정

- 지자체의 직접적인 대북사업 추진은 불가하여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참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하 “대북지원사업”이라 한다)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표-20>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변천 과정

<p>1999년, 대북인도적지원사업 시작 제주도 감귤보내기 사업</p>	<p>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던 교류협력의 단일 창구를 개방,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에 참여 가능</p>
<p>2003년, 행정자치부 심사, 승인권 폐지,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통일부 일원화 및 자율성 확대</p>	<p>2000.7. <남북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업무지침>에 의거, 통일부 심사 이전에 행정자치부 심사 2003.5. 폐지. 통일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에 의거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p>
<p>2019.10.22.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획득</p>	<p><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개정,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제2조(정의) ②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p>
<p>2021.9.14., 대북지원사업자 일괄 지정</p>	<p>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 지자체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 마련</p>
<p>2021.1.5., 지자체기금 지원규정 마련</p>	<p>전체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연 1회 지원 가능</p>

- 지방자치단체, 2019.10.22.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획득
 - 제2조(정의) : 대북지원사업자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됨.(단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2020년 11개의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 2021.9.14. 사업자 신청 없이 지자체를 일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함.
-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됨.
- 2022.1.5., 지자체 남북협력기금 지원 횟수 및 보조 비율을 민간사업자와 구분하여 규정
 - 연 1회에 한해(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019.10.22.	2021.9.14.
<p>제2조(정의)</p> <p>②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p> <p>제3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p> <p>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3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p> <p>③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2019.10.22.	2021.9.14.
<p>제8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p> <p>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p>	<p>제8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p> <p>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p>

〈2022.1.5.〉 개정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자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당 연 1회에 한해(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020.12.29. 일부 개정, 시행 2021.3.30.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지자체 참여 확대

- 위원 10인 중 1명 이상은 지자체 인사로 구성

<p>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p> <p>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p>	<p>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p> <p>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p>
---	---

2021.10.19. 일부 개정, 시행 2022.4.20.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지자체와 민관과 협력 강화 방안

- 정부의 지자체 및 민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포함

<p>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3. (생략)</p> <p>4.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p>	<p>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p>
---	---

<표-21>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과정

변화 과정	주요 내용
1998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태동	1999.2.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되었던 창구단일화 조치가 해제
2003년, 행정자치부 심사, 승인권 폐지,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통일부 일원화 및 자율성 확대	2000.7. <남북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업무지침>에 의거, 통일부 심사 이전에 행정자치부 심사 2003.5. 폐지. 통일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에 의거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참여 주체로 명시	1조 ④항에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2019.7. 통일부장관-17개 광역시 시·도 단체장,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 체결	통일부와 지자체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과 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 지원, 소통·협력 제도기반 조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실시 등
2019.10.22.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획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개정,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제2조(정의) ②“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020.12.14. 남북교류협력 추진 주체로 법률에 명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①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21.9.14. 대북지원사업자 일괄 지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

3. 비무장지대 입법화, 접경지역 안전 보장 및 발전

(1)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필요성

-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비무장지대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내법이 없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일부 법률에서만 단편적으로 규정
- 남북간 합의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DMZ에서 항구적 평화 정착
-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DMZ 국제평화지대화 의 법적 기반 마련
- 관할권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및 조정 : 유엔사 규정이 당초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사적 목적을 넘어 광범위하게 출입 통제권을 규율하는 문제¹⁶⁾

• 유엔사 관할권 문제¹⁷⁾

- DMZ의 민사행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가지고 있음(군사정전협정 제1조 제10항).
- DMZ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인 관할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으나 DMZ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따른 대한민국 영토로 한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으로 이해되어야 함.
-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유엔사와 협의·협력하여야 함.
- 평화체제 전환에 맞춰 유엔사의 관할권 행사 범위를 조정하고 관할권을 이양받아야 함.

16) 유엔군사령부는 민간인인 대선후보의 군복 차림 DMZ 방문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함. 권혁철, “왜 유엔사는 유독 ‘윤석열 군복’을 문제삼았을까”, 한겨레, 2021.12.25.

17) 이규창, “정전협정체제의 민사행정 내용과 의미 분석”,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2 VOL 01, 한국법제연구원, p. 38, pp. 48~49.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2020.10. 발의)

-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DMZ 실태조사, 지리제거 등 관련 사업 추진
- DMZ 출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규정을 둬으로써 유엔사 등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 제안이유

- 비무장지대는 그 동안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남북의 대치로 인해 오히려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하였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하였음에도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등에서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임.
- 이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 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라.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 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그 조성 과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시행할 수 있음(안 제17조).
-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18조 및 제19조).

(2) 접경지역 전단살포 금지 법안 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2020.12.14. 의결, 2021.3.30. 시행

-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 규정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 금지
 - 대북전단 등의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제4조),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규정하며(제24조 1항),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제25조)을 마련함.

〈신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계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9.)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2020.12.29.)

〈개정〉 제4조(정의)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등”, “살포”의 용어를 정의함.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통일부예규) 시행〉

가. 법 제4조제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란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함

나. 법 제4조제6호 중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이란 전단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함

다.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접경지역 전단 살포와 남북관계 긴장 고조

- 전단살포에 대해 북한은 2014.10.10. 경기도 연천군에 고사포 발사
- 2020.5.31.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보냄.
- 2020년 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위기가 고조되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살포 중단 촉구
- 2020.6.4.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한 철거가 될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 발표
- 2020. 6.16.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상호 비방·중상 중단과 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 합의 사항

-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제2조)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2018년 판문점 선언
2장1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표-22> 대북전단 살포 관련 경과 및 판례

규정 및 판례	내용
대북전단 살포 제지 관련 소송 제기(2014.6.5.)	한 민간단체 대표는 경찰과 군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판례 (2016.2.25.)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 인정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제지할 수 있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엔 국제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 3항 매우 제한적 환경을 전제로 정부가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타인의 권리나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적 보호에 한 정해 법률로 표현의 권리 제한 가능
전단 살포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 분쟁 사례	체코슬로바키아는 서유럽의 풍선전단 살포에 대해 1956.1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공식 문제 제기 ICAO 이사회, 결의안 채택(1960.6.) 통제되지 않은 풍선 비행은 항공 안전에 결정적인 위협,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 어떠한 것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20.6.4.)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인 바, 중단되어야 한다.

출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통일부 공식 블로그(2020.6.12.)를 바탕으로 재구성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 2020.12. 통일부를 바탕으로 재구성

(3) 접경지역 발전 및 남북협력

-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대치의 공간으로 주민의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고 지역발전이 지체되어왔음.
 - 남북 긴장이 고조될때는 일상생활 안전 위협, 관광객 감소 등 직접 영향 받음.

-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음, 지뢰 피해 등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함.

- 접경지역은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와 산불피해가 잦은 곳임.

·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법·정책 미비¹⁸⁾

- 접경지역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나 법률의 소관부처가 달라 실효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존재함.

: 「접경지역지원특별법」(행정안전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국토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산업자원통상부·기획재정부),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등

- 접경지역 발전 관련 「접경지역발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공동추진 경과

- 2000년 9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공동추진 합의

- 2004년 3월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채택 및 공동조사 추진

- 이후 남북 공동조사 중단

- 2009년 6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남한 국민 6명 사망, 협력 제도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진전 없음.

• 문재인 대통령, '남북접경위원회' 설치 제안

- 오슬로 포럼 기초연설(2019.6.12.): '국민을 위한 평화'

“접경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는 협력의 좋은 사례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접경지역에서 화재, 홍수, 산사태나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경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 대처했습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접경 지역에서도 산불은 일어나고, 병충해와 가축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경계는 어민들의 조업권을 위협합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습니다.”

18) 이효원 외 2인, 『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0, pp. .

4. 국민들이 체험하는 평화

- 문재인 대통령,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사,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
 - “평화공원 조성, 국제평화기구 유치, 생태평화 관광, 순례길 조성 등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

(1) DMZ 평화의 길 조성·운영

- 9.19 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가 철수된 곳에 둘레길을 연결하여 국민에게 개방
- 비무장지대 안에 걷는 길 조성
 - 비무장지대와 연결된 서부(파주), 중부(철원), 동부(고성) 지역별로 한곳씩을 1단계로 개방하고, 나아가 비무장지대 및 인근지역 전 구간을 연결하여 남북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DMZ 평화의 길
 -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접경지 10개 지자체 총 526km 구간에 생태·역사·안보 자원을 활용한 명품 도보여행길 조성 사업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0억원 투자
 -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개 시군마다 거점센터 1개씩을 여행자들의 공간으로 조성
- 추진 경과
 - 정부합동 브리핑, DMZ 평화의 길 조성 계획 발표(2019.4.3.)
 - DMZ 평화의 길 조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2019.4.24.)
 - 고성 구간(4.27), 철원 구간(6.1), 파주 구간(8.10) 개방

<그림-5> DMZ 평화의 길



출처 : 통일부·문체부, “DMZ 평화의 길” 올해 7개 노선 추가 개방…140억 투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3.02).

- 2021년 11월에는 DMZ 평화의 길 경기·강원·인천 7개 노선이 동시 개방

<표-23> DMZ 평화의 길

코스	주제	길이	주요 방문지
강화	국난극복의 피난처에서, 한반도 평화관광의 시작점으로	총 길이 61.1km, 도보이동 1.5km	강화전쟁박물관, 강화 평화전망대, 의두분초, 불장돈대, 대룡시장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북한 마을과 조강	총 길이 62.8km, 도보이동 4.8km	김포아트홀, 시암리철책길, 애기봉 전망대
파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명소로, 통일을 향한 DMZ 평화의 길	총 길이 21.4km, 도보이동 1.4km	임진각, 통일대교 입구, 도라전망대, 철거 GP
고양	수도권 최대의 장항습지와 행주산성의 이야기를 따라 가는 나들이	총 길이 29.5km, 도보이동 3.5km	고양관광정보센터, 행주산성역사공원, 행주나루터, 장항습지탐조대, 통일촌군막사
연천	아름다운 풍경, 분단의 아픔 그리고 평화의 희망을 나누는 여행	총 길이 12.3km, 도보이동 1.8km	고랑포구역사공원, 1.21 침투로, 000 초소, 승전 OP, 호로고루
철원	우리의 아픈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두루 만날 수 있는 곳	총 길이 15km, 도보이동 3.5km	백마고지 전적지, 공작새능선전망대, 비상주GP,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조망소

코스	주제	길이	주요 방문지
화천	물줄기를 따라가는 평화의 여정	총 길이 78.8km, 도보이동 8km	화천읍 배수펌프장, 북진로, 양의대 하천습지, 오작교, 평화의 댐 안내센터
양구	국토 정중앙에서 두타연을 따라 금강산을 향해 떠나는 첫걸음	총 길이 16.6km, 도보이동 2.7km	금강산가는길 안내소, 두타연, 금강산가는길 통문, 삼대교 통문
인제	침예한 갈등의 지역이 다시 상소로운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총 길이 46km, 도보이동 1km	평화생명마을 산촌휴양관, 대곡리 초소, 을지삼거리, 1052 고지
고성A (도보)	파도소리 따라 걷는 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금강산과 해금강	총 길이 7.9km, 도보이동 2.7km	고성통일전망대, 해안전망대, 통전터널, 남방한계선, 송도전망대, 통문, 금강산전망대
고성B (차량)	금강산과 해금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	총 길이 7.2km, 도보이동 없음	고성통일전망대, 삼거리, 금강산전망대

출처 : DMZ 평화의 길,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https://www.durunubi.kr/dmz-main.do>)

(2) 판문점 견학 제도 개선

-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기반으로 판문점 비무장화가 실현됨에 따라 국가안정보장회의 상임위원회(2019.10.4.)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통일부에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설치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창구 일원화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신청대상에 따라 구분 신청)	통일부로 일원화 (통합견학시스템 홈페이지/모바일)
신청 단위(인원)	일정규모 이상 단체만 (최소 30명 이상 40명 이하)	1인도 가능(최대 5명) (개인, 가족 단위)
신청 기간 단축	견학일 60일 전까지 신청	견학일 14일 전까지 신청
연령 확대	만 10세 이상	만 8세 이상

관문점 내 주요 시설

시설	내용
자유의집	북한의 판문각과 연락 업무를 수행하는 남한 측 건물 19.6.30. 최초 남북미 정상 3자 회동이 이루어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군사분계선 위에 세워진 가건물 7동 중 하나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공동 기념 식수 장소	18.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소나무(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를 심은 장소
도보다리	53년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동선을 줄이기 위해 판문점 습지에 만든 다리 4.27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산책 및 의자에서 30분간 환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입법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V

결론

ISSUE
PAPER

V. 결론

-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군비증강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음.
- 추상적이고 목적지향적인 대북정책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로 구체화하고 실행하려고 하였음.
- 남과 북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상황을 상호 점검하여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합의하고,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 이행조치를 마련해 감시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군사적 조치를 실천함.
-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함.
 - 2019년 유엔총회 기초연설,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발표
-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을 평화지대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
 - 2020년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접경지역 전단 살포 금지 법안 시행
-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국제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의 역량 강화에도 힘씀.
 -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지자체의 위상과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함.
 - DMZ 평화의 길 등 평화체험을 통해 대북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정책 추진
- 문재인 정부 초기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단절로 남북관계는 이전의 교착상태로 돌아감.
 - 북한은 국방력강화를 고수하고, 남북의 합의사항은 비무장지대 일부 변화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함.
- 남북 및 국제사회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를 시도해보려는 평화경제의 실현은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등 다자협력구상은 남북관계 진전 및 국제사회 참여없이 현실화되기 어려움.
-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에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음.
-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목표와 정책을 추진함.
- 추상적 한반도 정책은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화와 입법을 통해 구체화됨.
-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계속 추진해야 하며, 비무장지대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남북 및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해야 함.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조성의 주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분적으로 달성됨.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제1권, 선도국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
- »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제16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류지성 외 3인, 『DMZ 국제평화지대화 기반형성에 관한 법제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21).
- » 이민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 :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심으로』, (서울: 서울연구원, 2018)
- » 이효원 외 2인, 『남북접경지역 발전방안 법제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20)
- » 인천광역시, 『한반도 접경평화 선도를 위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 수립 연구』, (인천: 인천광역시, 2022).
- »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서울: 통일부, 2009).
- » 현승수 외,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서울: 통일연구원, 2019).

2. 논문

- » 김효은, “문재인 정부 비무장지대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접경지역통일연구』, 제5권 제2호·2021년 겨울9통권 제10호),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 » 이규창, “정전협정체제의 민사행정 내용과 의미 분석,”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2 vol 01, 한국법제연구원.
- » 조한범,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KINU Online Series CO19-21』, 2019.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이해,” 『지방자치 정책Brief』, 제58호(2018.12.), 2019.

3. 법령·규정(집)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4. 인터넷

- » 국방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통일부,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
-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각종 합의문 검색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ISSUE PAPER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Ⅷ)

2022 VOL. **04**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ISSUE PAPER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VIII)

2022 VOL. 04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과 입법

발행일 2022년 7월 29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FAX (044) 868-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ISBN 979-11-92325-15-6(95360)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통일법체 이슈페이퍼

ISSUE PAPER

2022 VOL. 04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410 FAX (044) 868-194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